

郡政質問 答辯書

질문일시 : 2005. 09. 09(금)

질문의원 : 신주범 의원

질문내용

1. 영유아 양육비지원 지원은 있는지?
2. 노인복지증진에 대한 지원은 있는지?

答辯者 : 社會福祉課長

郡政質問答辯內容

□ 질문요지

- 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구 증가를 위해 갖가지 아이디어를 내어 놓고 있는데 과연 우리군의 인구증가 대책 중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있는지?
- ② 노인복지 증진에 대한 지원은 있는지?

□ 답변요지

①에 대하여

- 관내 보육시설 및 아동수 : 30개소 1,256명
- 보육시설 영유아양육비 지원액 : 2,285백만원
(종사자인건비,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보육료 지원, 기능보강비 아동간식비, 난방연료비, 격무수당 등)
- 저소득 영유아보육료 지원 : 856명, 975백만원
 - 저소득층 차등양육비(만0세~4세)지원 : 548명 654백만원
 - 만5세아 지원 : 261명, 279백만원
 - 장애아 무상 지원 : 11명, 18백만원
 - 두자녀이상 지원 : 36명, 24백만원
- '06년이후 만5세아동(일반아동 포함) 무상교육 확대실시 예정
- 직장보육시설 설치 관련 육아공무원 보육수당 지원계획
 - 연간 소요액 : 14백만원
- 직장육아공무원 수유실 설치 계획
- 육아여성공무원 1일 1시간 육아시간 활용 의무화

②에 대하여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 4개사업장 95명 참여
(사업비 113,700천원)
 - 공익형사업 : 49명 [공공형(환경정비사업 등)]
 - 교육지원형사업 : 21명
[노-노 사업(홀로사는 노인요구르트배달)]
 - 자립지원형사업 : 15명 [시장형(짚신공예, 꿈꿈이사업)]
- 향후 단순 생계유지형 일자리사업에서 전문적인 일자리 창출

郡政質問答辯內容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입니다

신주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인구증가 정책 중 『영유아 양육비 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우리군의 영유아(만0세~만5세)의 수가 3,236명으로서 작년 3,524명에 비해 8.2% 줄고 있는 실정이며

물가상승으로 인해 자녀를 많이 출산하기에는 교육비나 생활비 등 육아부담 과중으로 대부분의 부모들이 출산을 적게 조정하거나 기피하고 있어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저 출산이 많은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영유아 아동이 30개소의 보육시설에서 1,256명이 보호 받고 있으며 아동보육을 위해 인건비, 교구교재비, 간식비, 차량비, 난방연료비 등 연간 총 2,285백만원의 보육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그 중 보육료 지원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육료 548명/654백만원, 만5세아 261명/279백만원, 장애아 11명/18백만원, 두자녀 아동 보육료가 36명/24백만원으로 총 846명에 97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정부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를 부양하는데 보육 비용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일반아동을 포함하여 만 5세 아동 전원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우리 군에서도 직장 보육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육아 공무원들에게 보육수당을 지원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수유를 할 수 있는 수유편의용품이 비치된 수유실을 군청 내 설치하여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육아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아래 부담 갖지 않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개인의 여건에 따라 육아여성들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활용을 의무화 할 계획이며

앞으로 효과적인 출산장려책으로 육아비용을 직접 줄여주는 감세 등 재정지원확대, 여성파트타임 일자리 취업기회 확대, 육아휴직기간보장 등 지원 방안을 점진적으로 검토하여 인구증가정책사업추진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노인인구는 현재 12,508명으로 전체인구(65,102명) 비례 19.2%로 내년이면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앞으로 노인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생산인구는 줄고 노인인구는 늘어나는 이러한 시점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우리 군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과 더불어 사회적 부양 부담경감 및 지방자치 경쟁력 강화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유형은 공익형, 교육복지형, 자립지원형으로 나누어 추진을 하고 있으며, 공익형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영역 중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제공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자리로 자연환경정비, 거리환경개선, 교통질서계도 및 행정기관 보조 등 일자리로 올해 59명이 상시 참여 하였습니다

교육복지형은 사회활동이 어려운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행복추구를 지원하는 노-노사업으로 건강한 노인이 그렇지 못한 노인을 보살피는 일자리로 독거노인, 고령 및 중증노인, 장애인 등 보호를 목적으로 현재, 우리 군에서는 독거노인 야구르트를 배달하여 노인들의 건강과 안의를 묻는 사업으로 21명의 건강한 노인이 504명의 거동이 불편하고 홀로 계시는 노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자립지원형은 소규모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기업을 공동으로 창업하여 자체수익이 일부 창출되는 일자리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짚신제작사업과 뽕뽕이사업을 거창군가정봉사원파견센터에 위탁을 하여 25명이 참여활동하고 있습니다.

짚신제작사업은 가조면 노인회 회원으로 구성하여 건전한 여가선용의 일환으로 시작, 잊혀져가는 전통공예를 후손에게 전수한다는 신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뽕뽕이사업은 우리지역이 청정지역임을 감안하여 무공해 비누를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으로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의 소득을 확보해 주고, 건강을 증진하고, 나아가 사회에 기여하는 기능 등 노인복지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많은 일자리 사업 창출과 많은 노인이 참여하도록 노력하며, 노인취업이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주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인구증가 정책 중 『영유아 양육비 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郡政質問答辯書

- 질문일시 : 2005. 9. 9
- 질문의원 : 신 주 범 의원
- 질문내용 : 인구증가 정책에 관하여
 - 자녀교육에 대한 지원은 있는지?

答辯者 : 戰略事業推進團長

郡政質問答辯內容

(답변내용 : 시나리오)

□ 질문요지

- 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구 증가를 위해 아이디어를 내어 놓고 있는데 우리군의 인구증가 대책 중 자녀교육에 대한 지원은 있는지?

□ 답변요지

- ① 거창군에서 학교 및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급식시설 개선 및 주변환경 정비 등에 대한 학교환경개선 지원 사업,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사업 및 영어강화사업으로 원격 강의시스템, 프로그램 연구 기자재 구입지원사업 등이 있음

郡 政 質 問 答 辯 內 容

□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입니다

신주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인구증가 대책 중 자녀교육의 지원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군에서 학교 및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우리군에서는 학교지원사업으로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2개대학에 대하여 급식시설 및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2005년도에 7개교 350,00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급식 식재료비의 지원조례 제정과 함께 34개 초·중·고등학교에 급식 식재료비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또한 국제화(영어)교육사업으로 643백만원을 확보하여 원격강의시스템 및 프로그램 연구 기자재 구입지원 등 영어교육 강화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초·중학생을 위한 원어민 영어캠프를 운영하여 200명의 학생들에게 개인당 170,000원 정도의 참가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의 높은 만족도를 얻는 등 다방면에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향후 학교급식지원, 국제화교육 지원, 환경개선사업 지원, 장학사업 등 교육지원 사업을 확대운영함으로써 거창군민이 자부심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 거창군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신주범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지역발전과 교육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신주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郡政質問 答辯書

- 질문일시 : 2005. 9. 9
- 질문의원 : 신 주 범 의원
- 질문내용 : 인구증가(출산장려에 대한 지원)
정책에 관하여

答辯者 : 保健所長

郡政質問答辯內容

(답변내용 : 시나리오)

□ 질문요지

- ① 인구증가 (출산장려에 대한 지원)정책에 관하여

□ 답변요지

- ① 2005년 1월부터 저 출산 장려사업으로 출산장려금 및 산후조리비 지원 (셋째아이)
 - : 출산장려금200,000원(도비50,군비50),산후조리비250,000원(군비)
 - 출산장려금 : 41명 8,200천원
 - 산후조리비 : 40명 10,000천원
- ② 임신부 건강관리를 위하여 철분제 제공
 - 1인당 5개월간 철분제 공급 : 101명 9,360정
- ③ 건강한 출산을 위한 출생아 준비교실 운영 : 2회 27명
 - 임신부 체조교실 : 9월~11월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
- ④ 영유아 관리를 위한 기초예방접종 안내등
 - 출생아 축하엽서 발송 : 266명

郡 政 質 問 答 辯 內 容

□ 보건소장 강석재 입니다

신주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증가 정책 중 출산장려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인구증가 정책으로 출산장려 지원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 2005년 1월부터 셋째아이 출생아에 한하여 출생아 1인당 출산장려금 200,000원 및 산후조리비 250,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현재 부모 및 출생아의 주민등록이 우리군에 등재 되어있는 거창군민에 한해서 입니다)

8월말 까지 출산장려금은 셋째 출생아 41명에게 팔백이십 만원을 지원하고 산후조리비로는 산모 40명에게 천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 또한 임부 와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 5개월부터 출산시까지 5개월분의 철분영양제를 무료로 공급하여 지금까지 101명의 임부에게(9,360정) 지원 하였으며, 건강한 출산과 안전분만을 위한 출산준비교실을 2회(27명) 운영 하였으며, 9월부터 11월까지 주2회 임신부 체조교실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 관내 출생아이 전원을 대상으로 영유아 기초 예방접종 안내등의 출생 축하엽서를 보내어 영유아 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 올해 9월초 정부의 저 출산 고령사회 정책본부 (위원장:대통령)출범으로 9월중에 정부의 출산지원정책 이 발표될 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정부의 출산지원 정책 내용을 참고하여 2006년도에는 우리군 실정에 맞는 출산장려지원책을 수립하여 인구증가정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郡政質問答辯書

- 질문일시 : 2005. 9. 9
- 질문의원 : 신 주 범 의원
- 질문내용 : 유해조수 구제사업에 대하여
 - ◇ 매년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크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 그러나 현재의 구제사업 활동으로는 효과가 낮음, 따라서
 - ⇒ 유해조수 포획허가(구제사업)시 군내 전 지역으로 확대 조치할 용의는?
 - ⇒ 구제사업에 참여하는 수렵인에게 실비정도의 출동수당을 지급할 용의는?

答辯者 : 山林環境課長

郡政質問答辯內容

□ 질문요지

- ◇ 매년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크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 그러나 현재의 구제사업 활동으로는 효과가 낮음, 따라서
 - ⇒ 유해조수 포획허가(구제사업)시 군내 전 지역으로 확대 조치할 용의는?
 - ⇒ 구제사업에 참여하는 수렵인에게 실비정도의 출동수당을 지급할 용의는?

□ 답변요지

- ◇ 유해조수 구제사업 현황
 - 구제활동 : 수렵협회 소속 전문업사
 - 포획지역 : 피해지역으로부터 반경 1.5km 이내
 - 총기반출 : 낮12시부터 다음날04시까지
 - 포획허가상황 : 2004년 → 238건 2005년 → 48건
- ◇ 포획지역을 군내 전역으로 확대함은
 - 환경부 지침 위배 및 총기관리상의 문제 등으로 불가함
 - 그러나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검토함
- ◇ 출동 수렵인에 대한 수당지급은
 - 현재 수렵협회에 유해조수 구제활동비 및 운영비 명목의 보조금 지급(2개단체, 400만원)
 - 별도의 출동수당을 지급함은 불가할 것임,

산림환경과장 이 태 우입니다.

신 주 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해조수 구제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서는 매년 유해조수로 인하여 농작물 등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점차 그 정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구제사업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대책으로 포획허가 지역을 군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또한 출동하는 업체들에게 실비차원의 수당을 지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 먼저 우리군의 유해조수 구제사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해조수 구제사업은 피해 농민으로부터 유해조수 구제신청이 있으면 관내에 조직되어 있는 수렵협회의 전문 업체로 하여금 포획토록 하고 있으며,

허가지역은 피해지역으로부터 반경 1.5km이내에서 포획활동이 가능하고,

총기반출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운영을 해

오다가 현재는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가장 효율적

으로 구제활동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낮12시부터 다음날 04시까지 총기반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유해조수 포획허가 상황을 보면 2004년도에 238건이 허가되었으며, 2005년도에는 48건이 허가된바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서는 이중 허가지역을 군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구제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환경부의 수렵에 관한 규정에는 수렵가능 지역을 “피해지역과 그 주변지역”으로 한정하고 있고, 또한 경찰관서의 총기관리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군내 전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허가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다음으로 의원님께서서는 구제사업에 참여하는 수렵인인에게 실비정도의 출동수당을 지급할 용의가 있는지

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 우리군에는 현재 2개(경남수렵협회, 대한수렵협회)의 수렵협회가 있으며, 총75명의 수렵인으로 구성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본 수렵협회에 유해조수 구제 활동비 및 단체운영비 명목으로 연간 각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 주 범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郡政質問答辯書

- 질문일시 : 2005. 9. 9
- 질문의원 : 신 주 범 의원
- 질문내용 :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에 관하여
 - 우리군의 톤당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은?
 - 하수처리 구역내에 하수관거 연결현황과 미 연결 구역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어떻게 하는지?
 - 주민에게 부담이 많이 되는 원인자부담금을 거창군 조례에 의하여 감면 의향은 없는지?
 - 건축물 사용승인시 원인자부담금 영수필증이 건축법상 필요한 서류인지?
 - 원인자 부담금은 건축주와 세입자중 누가 납부를 해야 하며,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책은 없는지?

答辯者 : 上下水道事業所長

郡政質問答辯內容

(답변내용 : 시나리오)

□ 질문요지

- ① 우리군의 톤당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 ② 하수처리구역내에 하수관거현황과 미설치 구역의 원인자 부담금 부과는 어떻게 되는지?
- ③ 주민에게 부담이 많이 되는 원인자부담금을 거창군 조례에 의하여 감면의향은?
- ④ 건축물 사용승인시 원인자부담금 영수필증이 건축법상 필요한 첨부서류인지?
- ⑤ 원인자부담금은 건축주와 세입자중 누가 납부해야 하며, 세입자 보호를 위한 방안은 없는지?

□ 답변요지

- ① 에 대하여
 - 거창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톤당 금액 : 1,378,980원
 - 경남 타시.군 부담금 평균 톤당 금액 : 1,510,824원
- ② 에 대하여
 - 거창군 하수관거 현황
 - ┌ 거창읍 지역 : 63.244km(미설치 : 43.432km)
 - └ 가조면 지역 : 42.173km(미설치 : 26.580km)
 - 미설치 지역 원인자부담금 : 미부과
 - ☞ 정화조 또한 오수처리시설 의무설치
- ③ 에 대하여
 - 2004년 거창군고시 제2004-1호[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고시]에 의해 설치규모(용량)별 차등감면 적용(10%~35%)
 - 2005년 단가 : 2004년 부과기준으로 동결 부과

④ 에 대하여

- 납부영수증 확인 :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함
 - ☞ 준공검사필증 등을 교부할때에는 부담금 납부를 확인

⑤ 에 대하여

-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 : 시설,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자

郡政質問答辯內容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종 연 입니다.

신 주 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 제32조 및 거창군하수도 사용조례에 근거하여, 하수처리구역내에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자가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발생오수를 합류식 및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는 경우,

○ 그 건축물의 하수량에 대하여 하수처리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비용의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 우리군의 톤당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은

○ 2002년 1월 1일부터 관련법 제정으로 인하여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우리군에서는 거창읍 지역과 가조면 지역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산출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거창읍과 가조면 지역의 하수처리시설 건설비용 등의 차이로 인하여 다른 단가를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4년 부터는 두 지역 구별없이 단일부담 사업비 톤당 단가인 2,121,520원을 용량별 4단계로 차등화시켜 35%에서 10%까지 감면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는데,

○ 대부분 가정용의 경우에는 35% 감면이 해당되어 톤당 1,378,980원입니다.

○ 참고로, 2005년 9월 현재 경상남도내 지자체의 가정용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보면, 최고는 함안군으로 톤당 3,011,900원이며, 최저는 양산시로서 845,742원이며, 인근 함천군은 1,485,000원, 함양군 1,164,000원, 산청군이 1,348,570원이며, 도내 평균 부과금액은 1,510,824원으로 우리군은 평균보다 적은 금액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다음은 하수처리구역내에 하수관거 연결현황과 미설치구역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군의 하수관거 현황은,

○ 거창읍지역은 63km로서, 이중 43km 정도가 미설치 상태로 있고,

○ 가조면지역은 총 42km로서, 이중 26km 정도가 미설치 상태로 있습니다.

○ 미설치 지역에 대하여는 년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공사중인 지역은 양평, 노혜, 절부, 운정, 정장 마을 등 입니다.

○ 하수관거 미설치 지역에 대하여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에 의하여 개인별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군민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조례에 의해 감면시킬 의향이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2003년도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용역결과 거창·가조지역의 단일부담 사업비 톤당 단가 2,121,520원을 적용시,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부과금액이 매우높아 군민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토대로 하수처리시설 설치단가에 오수발생량 10톤까지는 65%, 10톤~20톤 이하는 70%를 적용시켜 오수처리시설 설치 비용과 비교하여 적은 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을 2004. 2. 19. 거창군 고시 제2004-1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고시]로 고시하고 이를 근거로 설치규모별 차등감면을 적용시키고 있으며,

○ 또한, 2005년에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방물가 안정과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2004년 부과기준으로 동결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 2005년부터 상하수도 분야가 공기업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별로 독립채산제 운영이 요구되는바, 하수도는 원인자가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서 현재로서는 추가감면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 다음은 원인자부담금 납부영수증이 건축물 사용 승인시 첨부서류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준공검사필증 등을 교부할 때에 담당공무원이 부담금 납부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는 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체납을 방지하여 지방공기업의 예산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끝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의무자는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 제2항 제4호에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로 되어 있으며, 세입자의 필요에 의한 건축물 용도 변경으로 오수발생량이 증가 할 때에는 경우에 따라 세입자와 건축주와의 협의에 의해 세입자가 납부하는 사례가 있으나, 기본적인 납부의무는 건축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주범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